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 기 덕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68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동 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제시하고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안 제3조제9호와 같이 ‘에너지공동체’를 ‘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의 에너지 절약·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,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’라고 그

용어의 뜻을 명확히 제시하고, ‘제반’을 ‘모든’으로 바꾸는 등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